

부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427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호, 윤종휘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변론 종결 2022. 5. 18.

판결 선고 2022. 7.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12. 28. 체결된 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6,179,57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 엔진 부품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선박용 기계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선박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C의 대표이사, F는 C의 직원이다.

나. C의 기망에 의한 원고와 피고 측의 거래

- 1) E, F는 2016. 2.경 피고에게 C이 선박관리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부품 공급을 발주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가 C과 거래하는 부품제조업체인 D(이하 별도로 특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원고가 운영하는 D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에 자금을 보내 주면 원고를 통해 부품을 제조하여 이를 납품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 2)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C이 G으로부터 선박부품 공급을 발주받아 이를 다시 H과 피고에게 발주하면, H과 피고가 부품을 제조하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선박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G에 납품하며, 납품 완료 후 C이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H과 피고에게 H과 피고가 미리 지급한 물품대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는 2016. 6. 2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188,7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H은 2016. 3. 3.부터 2016. 8. 9.까지 원고에게 6,170,789,218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거래에 관하여 3,977,1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G(발주, 허위)	→	C(발주)	→	H 및/또는 B(피고)(발주, 금전지급)	→	D(원고)(세금계산서 발행)
-----------	---	-------	---	------------------------	---	-----------------

다. 기망행위 발각 후 관련자들의 조치

- 1) 2016. 9.경 C이 G로부터 선박부품 공급을 발주받은 사실이 없고, E, F가 관련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 나.의 2)항과 같은 거래구조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자, 피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피해변제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경 내지 2016.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와 H을 속여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회수 시키지 못할 시에는 D의 경영권을 양도하며 기계장치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2) 또한 원고는 2016. 9.경부터 12.경까지 피고에게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인 3,977,160,000원 상당의 선박부품(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2016. 12. 30. 피고에게 '피고가 D에게 2016년 상반기 선지급한 물품대금 3,977,160,000원(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대한 물품공급을 상호변경 합의된 물품으로 2016. 12. 30. 물품공급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3) 원고는 이후에도 2017. 1.경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사죄로 피고에게 D의 경영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권양도양수계약서와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 4)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동산을 C에 납품하였다가 2016. 12. 28. C과의 사이에 C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동산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자 C 대표이사 E(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증자 피고 대표이사 I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상기 증여계약은 갑이 을에 선박기부숙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기로 인하여 을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기에 갑이 본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동산 증여로 인하여 갑이 을에게 끼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을이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본 건 동산증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갑이 별지 목록의 동산 증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을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 무상증여를 통하여 갑은 을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2조】갑은 2016. 12. 28. 자기 소유인 아래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C 재고리스트

【제3조】갑은 증여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며, 그 물건을 인도하고, 을은 위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물건의 인도를 받는다.

【제4조】을이 제공하는 동산 증여에 대하여 갑이 지칭하는 감정기관 또는 업체의 감정평가에 따라 증여액을 산정할 수 있다.

5) 이에 따라 E, F의 기망행위 발각 이후 당사자들간 이 사건 동산 거래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G(발주, 허위)	→	C(이 사건 동산 공급)	→	H 및/또는 B(피고)(이 사건 증여계약)	→	D(이 사건 동산 공급) (원고)
-----------	---	---------------	---	-------------------------	---	--------------------

라. 원고 등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 E, F는 C과 피고 등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7. 7.경 '① 원고, E, F는 2016. 2.경 피고의 대표이사 I를 통해 소개받은 H의 대표이사 J을 기망하여, C이 선박관리회사인 G으로부터 선박부품 공급계약을 발주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H이 피고를 통해 C과 거래하는 부품제조업체인 D에 자금을 보내 주면 D을 통해 부품을 제조하여 이를 납품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6. 3. 3.부터 2016. 8. 9.까지 합계 6,170,789,2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② E, F는 공모하여 2016. 2.경 피해자인 피고의 대표이사 I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가 D에 자금을 보내 주면 D을 통해 부품을 제조하여 이를 납품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6. 6. 2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합계 1,188,700,000원을 D(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5, 658, 2018고합56(각 병합)].

2) 위 법원은 2018. 9. 14. E,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E을 징역 5년, F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E, F와

공모하여 H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는 E, F의 공모 사실은 모른 채 피고로부터 부품을 발주받은 것으로 알고 그에 따라 일부 부품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E, F 및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8노599), 위 법원은 2019. 5. 1. E, F 및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의 E, F,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2019. 8. 26. E, F, C를 상대로 'E, F, C의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로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인 3,977,16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시적 일부 청구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8099).

2) 위 법원은 2020. 4. 23. 'E, F, C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E, F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C과 피고 등의 거래구조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3,977,16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동산을 공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이 사건 동산의 가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기한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동산의 가액 상당액(C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평가액)인 856,179,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와 C 사이에 2016. 12. 28.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동산의 보관, 이동 등에 관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인증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었고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원고는 이를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6. 12. 28. 또는 늦어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8. 9. 14. 내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9. 5. 1. 무렵²⁾에는 C이 자신의 전 재산인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8. 9. 14.경에는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의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인 2021.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는 E, F에게 기망을 당하여 C이 피고에게 선박부품을 발주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이를 생산하도록 하고 원고가 생산한 선박부품을 G에 납품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수익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위와 같은 거래구조가 허위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로부터 피고가 2016년 상반기에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 사건 동산을 납품받은 다음 이 사건 동산을 H를 통해 C에 납품하였으며,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다시 증여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였다. 원고, 피고 측과 C 사이의 납품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은 E, F에 의한 기망행위의 발각 이후 피고의 피해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 여겨진다(원고 자신이 피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C에 이전한 것은 기존의 거래구조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계에 따른 것이지³⁾ C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이 사건 동산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관련자들 사이에 이러한 사정은 양해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납품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동산을 가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협력하였다. 원고가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동산은 실제로는 김포시에 있는 H의 공장으로 납품되었다가(을 제8호증 제10면) 2016. 12. 27.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C의 창고로 운반되었고, 2017. 1.경 다시 C의 창고에서 원고의 공장이 위치한 양산시 인근에 있는 피고의 창고로 운반되었다. 당시 원고는 H의 공장이나 C의 창고에 방문하여 이 사건 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를 포장하여 운반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동산이 H, C을 거쳐 다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피해변제를 주장하면서 2018. 5. 2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피해자(H)에 납품하였다', 'E이 제출한 참고자료인 2016. 12. 27.자 납품 이행확인서에서 H이 C에 공급하였다는 물품내역서 목록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던 목록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을 제15호증 제3면),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동산이

우선 C에 이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에는 E의 피고에 대한 변제내역에 관한 증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인증서(을 제6호증, 관련 형사사건 증거목록 순번 58)가 제출되어 있었으며, 원고 역시 공동피고인으로서 위 증거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증거인부를 하였고(을 제14호증),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판단되었다(갑 제1호증의 1 제27면). 위와 같은 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던 중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동산이 C에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통해 C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형사사건의 증거서류는 1,600면에 달하므로 원고가 양형 자료로 제출된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피해 변제내역은 공동피고인으로서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의 공모 여부나 양형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이 방대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의 지시를 받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E, F 측에 지급하였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고에게 선박부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납품한 물품대금은 F가 주기로 했었는데 이는 받지 못하였다'(을 제8호증 제8면 이하)고 하는 등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납품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부터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인데, 당시 C은 허위의 거래구조를 통한 E, F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뿐 실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사건 당시 C이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C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정민

판사이상언

판사장윤실

1) 아래 라.항에서 보는 원고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이다.

2) 피고는 답변서 및 2022. 5.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6. 12. 28.이고, 설령 원고가 E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이 내려진 2019. 5. 1. 무렵에는 그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2. 16.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는 늦어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14. 이전에 이 사건 동산 증여계약의 존재 및 피보전채권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납품받을 당시 C와 피고 등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의 답변서 제6면 등 참조) 피고로서는 기존의 거래구조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